**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  |  |  |  |
| --- | --- | --- | --- |
| 성 명  (상호‧대표자) | 김피해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900101-1000000 |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 부산시 사상구 00아파트 202호 | | |
| 직 업 | 공무원 | | |
| 전 화 | 010-1111-2222 | | |
| 이메일 | 없음 | |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  |  |  |  |
| --- | --- | --- | --- |
| 성 명 | 박피고 | 주민등록번호 | 모름 |
| 주 소 | 대구시 동구 dd아파트 101호 | | |
| 직 업 | 건설업 | | |
| 전 화 | 010-1111-1111 | | |
| 이메일 | 모름 | | |
| 기타사항 | 없음 | | |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분양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3년 03월 30일 14시 35분경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부산 해운대구 신축 빌라 분양권 계약금 5천만원을 주면, 6개월 뒤에 분양권을 주겠다"며 거짓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분양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는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합니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분양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없음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없음 |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없음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산진경찰서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